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민의 문화권 제고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문화영향평가 대상(안 제5조)

○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구성·운영(안 제8조~제10조)

○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담직원(안 제11조 및 제12조)

○ 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안 제13조)

○ 문화영향평가의 위탁(안 제14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민의 문화권 제고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을,
 -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담직원을,
 -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를,
 - 안 제14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문화정책의 목표가 삶의 질과 행복의 핵심요소가 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넓혀 충청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바람직한 조례라 판단됨.

붙임 :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끝.